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2370

2025년 3월 5일 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아이수루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3. 상정일자 :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(2025년 3월 5일 상정, 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아이수루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.
- 특히,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함.

○ 이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 경(제명)
- 피해자는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계획 수립 시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(안 제4조)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(안 제8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아이수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70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과 그 범위에 관한 명확한

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,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 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·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 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9월, 교육부는 '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결과' ¹⁾ (이하 '조사결과')를 발표하였고, 이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상당수가 교직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[표-1] 학교 허위합성물(딥페이크) 피해현황 <교육부 발표, 2024.9.9.>

7 8	피해 신고(건)				수사 의뢰(건)				삭제지원	피해자 <u>현황(명)</u>			
구분	계	초	중	고	계	초	중	고	연계(건)	계	학생	교원	쟥등
누적합계 (1.1.~9.6.)	434	12	179	243	350	11	151	188	184	617	588	27	2
1차조사 (8.27. 기준)	196	8	109	79	179	7	96	76	97	196	186	10	0
2차조사 (9.6. 기준)	238	4	70	164	171	4	55	112	87	421	402	17	2

-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인 교직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지원 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,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받은 교직원도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

¹⁾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결과(교육부 발표, 2024.9.9.)

료됩니다.

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- 1) 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
- 동 개정조례안 제명은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적용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로 확대하고, 지원 범위를 예방 및 교육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,

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2) 정의(안 제3조)에 대한 검토
 - 안 제3조제3호는 '교직원'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또한 같은 조 안 제5호는 '피해자'를 '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받은 교직원'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'피해자'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바, 조례안에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한 것으로,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.

- 3) 지원 범위(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8조)에 대한 검토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'학생'을 '학생과 교직원'으로, '예방·대응 교육'을 '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'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

안 제4조 및 제8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명시하면서 '보호 지원'을 추가하여 각각 '상담 및 보호지원'과 '상담 등 보호 지원'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하고,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,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.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- V. 토론요지 : 없음.
- 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- ₩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- ₩ 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"로한다.

제1조 중 "학생"을 "학생과 교직원"으로, "예방·대응 교육을 실시하여"를 "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"로 한다.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"교직원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피해자" 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

제3조 중 "학생"을 "학생과 교직원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"상담"을 "상담 및 보호 지원"으로 한다. 제8조제2항제2호 중 "상담"을 "상담 등 보호 지원"으로 한다.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	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
및 교육에 관한 조례	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학생</u> 이 디지털	제1조(목적) <u>학생과 교직원</u>
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	
있도록 성범죄 <u>예방·대응 교육을</u>	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
<u>실시하여</u>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	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</u> 설〉	3. "교직원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
	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
	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
	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
	말한다.
<u>3</u> . (생 략)	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u> </u>	5. "피해자"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
	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
	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
	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	제3조(책무)
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울시 내	학생과 교직원
<u>학생</u> 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	
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, 디	
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	
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					
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					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	②					
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					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			
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<u>상담</u> 사항	3 <u>상담 및 보호</u>					
	<u> 지원</u>			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			
제8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	제8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			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			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	②					
한다.		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		
2.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	2 <u>상</u>					
원 <u>상담</u>	<u>담 등 보호 지원</u>			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	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			